

<h1 style="margin: 0;">DHQ-GS-002</h1> <h2 style="margin: 0;">이사회 운영규정</h2>	
	제정일자: 2015-02-05 제정
	개정일자: 2023-07-26 개정 개정차수: 4

<h3 style="margin: 0;">목 차</h3>
<p><b>제 1 장 총칙</b></p> <p>제1조 목적</p> <p>제2조 적용범위</p> <p>제3조 권한</p> <p><b>제 2 장 구성</b></p> <p>제4조 구성</p> <p>제5조 의장 &lt;일부개정&gt;</p> <p><b>제 3 장 회의</b></p> <p>제6조 소집권자 &lt;일부개정&gt;</p> <p>제6조의2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의 경우 &lt;신설&gt;</p> <p>제7조 소집절차</p> <p>제8조 결의방법</p> <p>제9조 부의사항&lt;일부개정&gt;</p> <p>제10조 이사회 내 위원회</p> <p>제11조 위임</p> <p>제12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</p> <p>제13조 의사록</p> <p>제14조 간사</p> <p>제15조 관계인의 의견청취&lt;신설&gt;</p> <p><b>부 칙</b></p>

제, 개정일자	개 정 사 유	작성자	검토자	승인자
2015.02.05	신규 제정			이사회
2015.12.21	일부 개정			이사회

2016.06.10	일부 개정			이사회
2017.05.26	일부 개정			이사회
2023.07.26	일부 개정			이사회

**제 1 장 총 칙**

**제1조 (목적)**

이 규정은 두산밥캣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 (권한)**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**제 2 장 구 성**

**제4조 (구성)**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5조 (의장)**

- 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2016. 6. 10 일부개정>

**제 3 장 회 의**

**제6조 (소집권자)**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이 소집권자의 부재나

유고 시 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2016. 6. 10 일부개정>

② 재적 이사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사항, 회의소집 희망일자 등을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소집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10일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 또는 소집권자가 부재나 유고시 청구자 공동 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6조2 (대표이사의 직무대행)

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2016. 6. 10 신설>

### 제7조 (소집절차)

소집권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의 개최 직전일까지 서면, 구두, FAX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

### 제9조 (부의사항)

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- ② 경영에 관한 사항
  - 가. 사업계획 및 예산
  - 나. 중장기 사업계획
  - 다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라. 사장 이상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,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  - 마. 이사회 운영규정 제·개정
  - 바.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·개정
  - 사.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

- 아.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
- 자.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차. 국내외 지점·법인(당사가 최대주주이거나 1인 주주인 법인)의 설치, 이전, 폐지 및 철수
- 단, (i) 지점을 제외한 국내외 사무소 등의 설치, 이전, 폐지, (ii) 해외지점의 동일 국내에서의 이전 (iii)프로젝트용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치, 이전, 폐지, 철수에 대해서는 부의 대상에서 제외함

### ③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획득
- 나. 자본금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,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- 다. 관계회사의 주식 및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
- 라. 사채의 발행 및 모집에 관한 사항
- 마. 전환사채, 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
- 바. 준비금의 자본금전입

### ④ 이사에 관한 사항

- 가.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, 집행 임원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 제·개정.
- 나. 상법 제397조의2의 승인사항 및 제398조의 거래

### ⑤ 기타

- 가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
- 나.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가 필요하다고 사회공헌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
- 다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<2017.05.26 일부개정>

## 제10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이사회내 위원회관련 규정에 의해 정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제11조 (위임)

이사회는 법령,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

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12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.

#### 제14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회의의 소집통고·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#### 제15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 <2023.07.26 신설>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1. 이 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6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7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3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